

# 저널리즘의 품위는 누가 지키나?



모바일 인터넷 뉴스 구독자가 늘고 있는 환경에서 지나친 클릭 경쟁이 자극적, 선정적 보도 관행을 부추기고 급기야 옐로 저널리즘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언론사의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언론의 신뢰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스 소비 패턴이 제목과 사진을 스킵하는 형태로 같다 보니, 이른바 ‘메이저’라 불리는 큰 언론사들조차도 클릭 경쟁 속에서 ‘선을 넘는 보도’로 저널리즘의 품위를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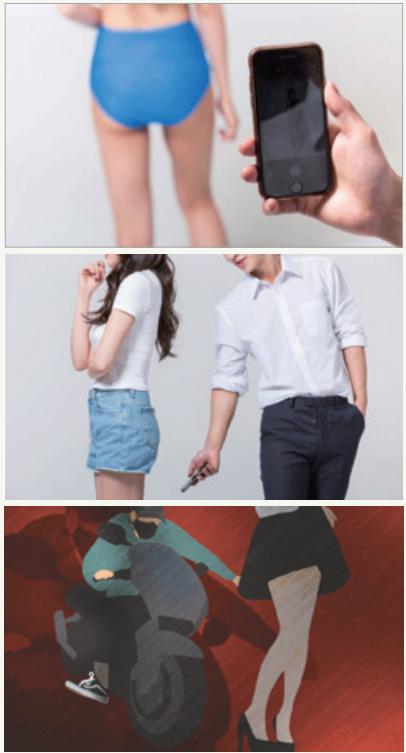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언론 보도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 신문윤리강령에 근거하여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과징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제재이고, 각 언론사의 자율규제와 자정노력에 맡기는 상황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리위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신문윤리〉를 참고해 최근 3개월 동안 주의, 경고 결정을 받은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 인터넷신문부터 메이저언론까지, 신문윤리위 주의 경고 제재 대상

중앙일보의 6월 29일자 온라인뉴스 〈전미선 사망 전주 호텔 가보니... 구급대원 왔을 때 이미 심정지〉 기사와 경상일보의 8월 12일자 〈나는 같이 죽지 못한 죄인이었다... 정신과 치료도 보탬 안돼〉 기사는 배우 전미선씨의 자살을 르포 형식을 빌어 상세히 보도했던 것,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을 보도하며 자극적인 제목과 자살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인상을 주어 ‘주의’ 결정을 받았다.

스포츠동아는 7월 15일자 〈외국인선수 에이즈 파문〉 기사에서 ‘알렉산드로’라는 선수이름을 거명해 ‘주의’를 받았다. 윤리위는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실명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은 7월 15일자 〈광주수영대회 일본인 관광객 금지구역 몰래 숨어들어 여 선수 몰카 발칵〉 기사의 사진을 실제 몰카 촬영처럼 재현해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일보도 8월 20일자 〈지하철



▲ 흥미 위주의 선정적 사진 보도로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례

역서 몰카 찍던 철도시설공단 50대 직원 검거〉 기사를 보도하며 작위적인 자료사진을 게재해 ‘주의’를 받았다. 국민일보 8월 19일자〈오토바이에서 바지 벗고 음란행위 인천부릉이 입건〉 기사와 파이낸셜뉴스는 8월 19일자 동일 기사도 적절치 못한 그래픽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윤리위는 “범죄현장 전달을 위해 연출된 사진을 쓰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돋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7월 9일자〈일본 차량 테러까지... 피해자들 국민에게 피해주는 불매운동 폭력적 분통〉 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 7월 9일자〈김치테러 당한 렉서스 소유주 이미 산 일본차 어찌합니까〉 기사와 사진은 경찰 수사 결과 김치가 아니라 취객의 토사물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오보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시간 이상을 방치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9월 4일자〈진보원로 최장집 조국 악심 비판/ 기자간담회는 초법적 권리 행사〉 기사, 경향신문 9월 6일자〈유시민 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 논란〉 기사, 그리고



▲ 범죄와 무관한 주변 인물의 사생활을 보도해 명예훼손의 우려로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례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은 문화일보,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윤리위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9월 2일자〈단독, CJ 장남 마약 밀수 공항적발... 변종대마 양성 반응〉 기사, 한경닷컴 9월 2일자〈CJ가 장남 이선호 마약밀반입 입건... 이래나 사별 후 이다희 아나운서와 재혼 재조명〉 기사, 국민일보 9월 2일자〈마약밀수 이선호 누구... 이래나와 사별 CJ그룹 승계자〉 기사, 이외에도 부산일보, 영남일보,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쿠키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경인일보 등도 같은 내용의 기사로 ‘주의’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들 신문은 이선호 씨의 마약밀반입을 보도하면서 범죄와 무관한 전·현 부인의 이름, 사진, 사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9월 18일자〈양준혁 성 관련 구설수 올라... 첫 만남에 성적인 행동 요구〉 기사의 사진, 아주경제 9월 19일자〈양준혁 사진·미투 폭로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누리꾼 허위 미투 냄새가〉 기사의 사진도 ‘주의’를 받았다. 윤리위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 인사라도 잠자는 모습은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뉴스1 9월 6일자〈개 눈 담뱃불로 지진 여성... 신음하자 테이프로 입 막아〉 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 9월 6일자〈담배불로 개 눈 지진 여성 파문... 현상금 지급 공개 수배〉 기사의 사진은 여성이 애완견을 학대하는 유튜브 영상을 캡쳐해 그대로 게재하여 윤리위로부터 “독자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를 받았다.

한겨레 10월1일자 <조국 의혹 심각... 임명땐 사표낼 것/윤석열 임명 이를 전 청와대에 전화> 기사는 여권관계자들의 말만 받아들여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보도해서, 조선일보 10월 15일자 <지지율 급락하자 청, 조국에 사퇴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기사는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부호도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제목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일보는 10월 11일자 <어미와 놀던 강아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 기사의 영상물에서 차량이 강아지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과정과 차에 치인 강아지가 고통 속에 벼둥거리는 모습을 40초가량 그대로 노출했고, 10월 21일자 <무릎 끓려 40차례 따귀 침뱉기... 여중생 집단폭행 파문> 기사의 영상물에서는 구타당하는 중학생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은 10월 29일자 <개 구충제 복용 폐암4기 개그맨 4주만에 정상>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기사에서는 <제일바이오 등 개 구충제 관련주 급등 김철민 SNS에 논란 증폭>이란 제목으로 보도했으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개 구충제 복용 폐암4기 개그맨 4주만에 정상>이라고 제목을 바꿔 독자를 오인케 했기 때문이다.

#### 문제성 보도에 대한 시정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윤리위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도 문제성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권고’ 수준이라 제대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권고는 언중위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신문, 잡지,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문제성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미디어오늘 10월 17일자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 불이행>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에서 언중위가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언중위가 매년 1000여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지만, 해당 언론사에 결정문을 송부하는 데에만 그칠뿐 추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성과측정자료로만 활용해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KAA

이수지 susie@caa.or.kr

